

▶ 특별강연-III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현황과 발전 방향

박 창 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친환경인증

1.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개요

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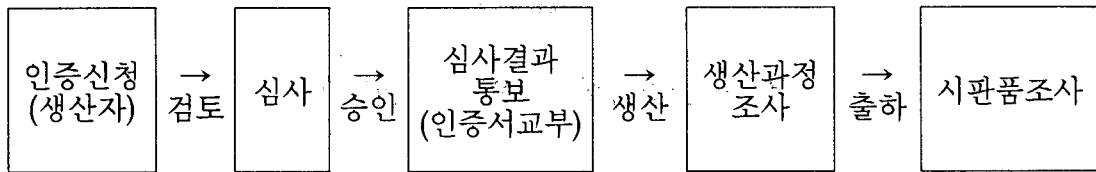
나. 인증의 효과

- 인증제도는 생산자에게 우수한 제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선택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여 선택을 돕는 등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임
- 생산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크게 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판매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
-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인증품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투명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이에 따라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유

- 통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음
-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즉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질항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음.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방법

□ 주요과정



□ 인증방법

-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양·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함
- 사후관리는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으로 조치하여야 함

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비교

종류별 항목별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① 경영관리	○영농자료 2년이 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이 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이 상 기록 보관	○영농자료 1년이 상 기록 보관
② 재배포장	○토양오염우려기 준준수 ○ 전환 기간 준수 (2~3년)	○토양오염우려기 준준수	○토양오염우려기 준준수	○토양오염우려기 준준수
③ 용수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농업용수 이상
④ 종자	○유기종자 ○GMO종자 금지	○유기종자 ○GMO종자 금지	○GMO종자 금지	○GMO종자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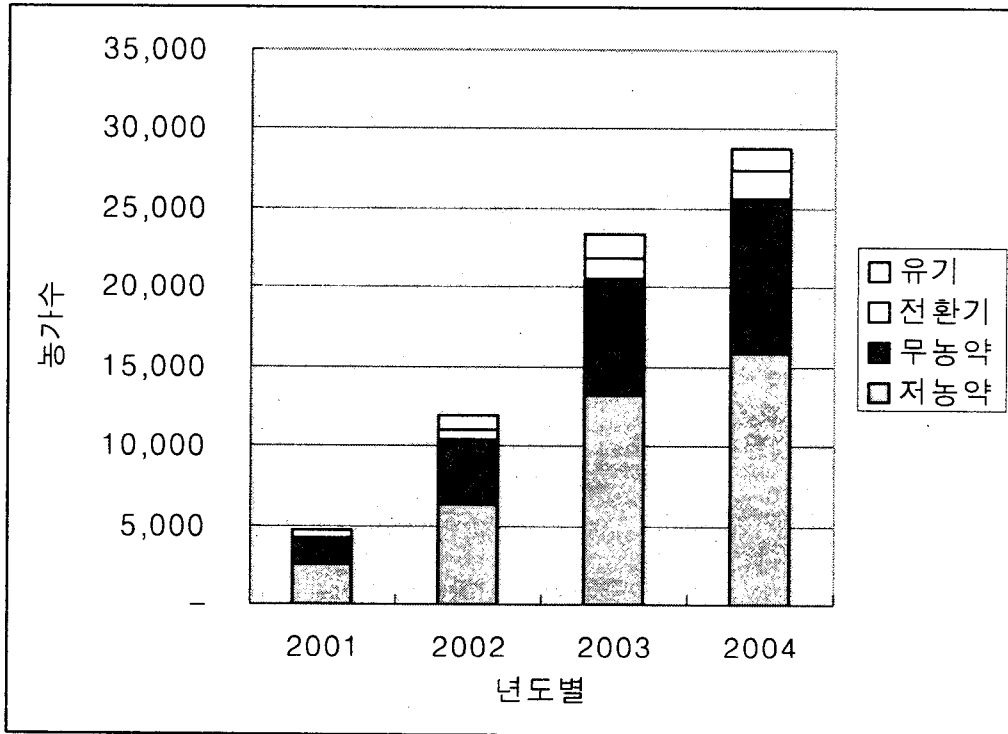
종류별 항목별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⑤재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 화학 합성농약 사용금지 ○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재배) 필수 ○ 유기농산물에서 유래된 유기질비료만 사용 ○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축분비료만 사용 ○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기준 준수 ○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 화학 합성농약 사용금지 ○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재배) 필수 ○ 유기농산물에서 유래된 유기질비료만 사용 ○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축분비료만 사용 ○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기준 준수 ○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합성농약 사용금지 ○ 화학비료 1/3이하 사용 ○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재배) 권장 ○ 일반유기질비료 사용 ○ 일반축분비료 사용 ○ 토양 및 작물생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기준 준수 ○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되지 아니할 경우 허용된 자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 살포회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제초제는 사용금지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 1/2이하 사용 ○ 윤작(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재배) 권장 ○ 제한하지 않음 ○ 자재 사용제한 없음
⑥생산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 방사선 사용금지 ○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자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 방사선 사용금지 ○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자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수송 등 모든 과정에서 청결유지 ○ 생산물의 병해충 및 방제시는 물리적 방법 사용 ○ 방사선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살포회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기준의 2배수 적용 ○ 방사선 사용금지
⑦잔류농약 허용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함 - 관행포장 비산, 관개 등 용수 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함 - 관행포장 비산, 관개 등 용수 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10이하 이어야 하며 잔류사유가 아래의 경우는 허용함 - 관행포장 비산, 관개 등 용수 오염,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인 경우는 허용함
⑧수경 · 양액 재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식 ○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튀워 직접 먹는 의 원료는 국내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식 ○ 콩나물, 숙주나물의 원료는 국내산 사용

마. 국제 유기인증기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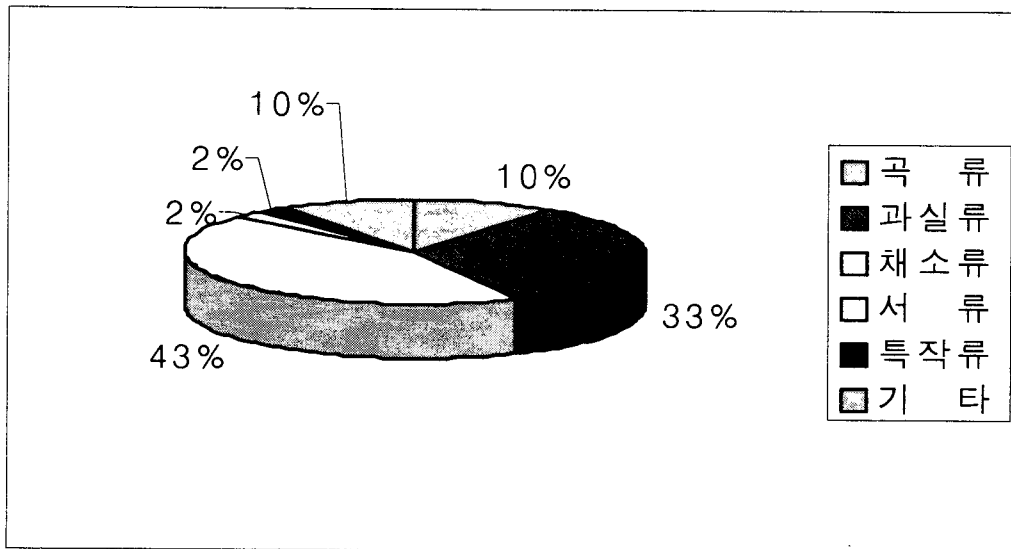
국가 기준	codex	IFOAM	미 국 유 기 식품법	E U 규칙	영국 토양 협회	CCOF	중국	일 본		한 국
								단체안	정부안	
화학합성농약	×	×	×		×	×	× △	×	×	×
화학합성비료	×	×	×		×	×	× △	×	×	×
전 환 이 행 년 수 (년)	2-3	2	3	2-3	2-3	3	-	일정기간	2-3	2-3
전 환 기 간 표 시	○	○	×	○	○	○	-	-	○	○
별 칙 규 정	인증취소	인증취소	취소5년	-	인증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	-	인증취소
적 용 범 위	농축수	농축수	농축수	농축	농축	농축	농축수	농축	농	농축
가 공	95-70	95-70	95-50	95-70	95-70	95-50	-	-	-	95
관 행 과 의 구 별	명확한 구별	고정적 경계	원충지대, 물리작장벽	명확한 구별	10-20m	최저25 피트	-	명확한 경계	적절한 대책	오염우려 없음
구 비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	유기	유기
유 기 물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지역내	유기
운 작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필요	기본	필요
종 자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유기	-	유기	유기	유기
사 료	유기85 %이상	유기80 %이상	유기	유기	유기	유기	-	유기	-	유기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가. 연도별 인증농가수



나. 종류별 인증품출하량



다. 인증기관별 세부사항

기관별	구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합계
농관원	건수(건)	320	320	2,117	2,442	5,199
	농가수(호)	928	1,272	8,847	15,734	26,781
	면적(ha)	1,635	1,483	7,642	14,995	25,755
	계획량(톤)	36,969	27,939	239,037	479,085	783,030
	출하량(톤)	22,067	11,985	151,761	255,276	441,044
국내전체	건수(건)	389	392	2,494	2,545	5,820
	농가수(호)	1,458	1,825	9,776	15,892	28,951
	면적(ha)	2,516	2,106	8,442	15,154	28,218
	계획량(톤)	47,100	98,779	368,520	483,340	931,847
	출하량(톤)	23,446	13,300	167,033	256,956	460,735

라. 품목별 출하실적(톤)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합계
곡류	3,032	3,769	27,788	11,391	45,980
과실류	786	1,695	6,138	142,455	151,074
채소류	18,505	6,571	73,835	100,248	199,159
서류	840	1,216	6,247	2,814	11,117
특작류	14	4	9,468	13	9,499
기타	269	45	43,557	35	43,906
합계	23,446	13,300	167,033	256,956	460,735

마. 수입국별 현황

구분	수입품목	수입국	수입량(톤)	비고
유기농산물	검정콩	중국	100	
	녹두	중국	40	
	콩	중국	4,420	* 두부, 콩나물용
	밀	중국	133	
	"	키르기스스탄	437	
	참깨	중국	183	
	계	2개국	5,313	

바. '04 실적분석

- 친환경인증농가의 지속적인 증가
 - 인증농가수 전년대비 123% 증가(23,309호→28,953)
 - 행정처분 전년대비 170% 증가(153건→259)
 - 인증실적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 필요

- 민간인증기관 인증실적 저조
 - 농가수 기준 전체인증의 7.2%(2,172호/28,953)
 -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대책 필요

3.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적인 여건

-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전체농산물 대비 2010년까지 10%로 확대 계획
 - ('04) 2.5% → ('05) 3.5% → ('10)10%('04보다 4배 확대)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04년 28천ha에서 '10년 95천ha로 확대
 - ('04) 28천ha → ('05) 42천ha → ('10) 95천ha ('04보다 3.4배 확대)

- 친환경농업 확산정책과 함께 증가하는 친환경인증 업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인증기관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나 현행 인증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의 관리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민간전문인증기관의 참여와 육성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친환경인증 35천여 농가 중 민간전문인증기관의 관리비중은 회원위주로 7%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우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정부중심의 인증체계로는 관리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인증업무관리에 한계

- 친환경담당인력(100여명)이 1인당 평균 300~350여 농가관리로 업무량 과중

□ 친환경인증물량 증가 대비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활성화 기반 미흡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한 가공수요확대 대책이 미흡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전문매장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 업체별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율(2004년 말 현재)

: 전문매장(39%), 할인매장(23.7%), 농협(15.6%), 백화점(9%), 쇼핑 센터(4.2%), 기타(8.5%)

나. 대외적인 여건

□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체제로 역할분담

□ 우리나라는 인증의 종류가 다양하나 외국은 유기(전환기)농산물에 대해서만 인증관리

□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운영비가 충분할 정도의 인증신청인에게 부담토록하고 있어 민간인증기관의 지정과 역할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정액제 : 한국 30천원/건, 일본(생산자 - 229,100엔/소매·수입업자 - 144,600엔 / 외국생산자등 - 160,900엔)

○ 정액 + 정률제 : 미국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담

□ 외국은 대부분 유통업자 인증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추진

	한 국	일 본	미 국	CODEX, IFOAM
인 증 주 체	정부, 민간기관	민간기관	주정부, 민간	-
인 증 대 상	농축산물 (가공품제외)	농산물(축산제외) 가공식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인 증 종 류	4종류 (무·저농약 포함)	유기, 전환기유기	유기	유기(전환기)

4. 친환경인증관리 중장기 계획

단기계획(2005~2007)	장기계획(2008~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전문인증기관 육성 ○ 인증업무의 단계적 민간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증기관과 농관원이 인증업무 병행 수행 ○ 친환경·GAP·품질인증체제 ○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율 5.5%로 확대 ○ 4가지 종류의 친환경인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전환기·무농약·저농약 ○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전문매장을 통한 거래 ○ 내수위주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전문인증기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사업 추진 ○ 인증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업무 담당 - 농관원은 인증기관 지도·감독·컨설팅 및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친환경과 GAP인증시스템을 통합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국제기준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농약, 저농약은 GAP로 통합 ○ 도매시장의 친환경 유통체제 구축 ○ 수출과 내수 병행 생산

가. 제도적인 시스템의 효율적 기편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인증단계를 축소
 - 재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등 4가지로 구분하는 현재의 복잡한 인증 단계를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2~3가지 단계로 축소
 -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강화

-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인증의 비용부담 경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유기는 국제기준과 같이 1년 유지)

- 인증업무의 역할분담을 위한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육성추진
 -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학 등을 위주로 시·도별 3개 정도 기관 육성
 - 지역 및 권역별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담당제 추진

- 생산에서 소비까지 투명성확보를 위한 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 도입
 - 인증취소자에 대한 인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유통과정의 투명 확보를 위해 유통업자 인증제도의 도입
 - 미인증 수입품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 혼돈을 발생시키는 외국어표시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

- 친환경인증농산물 가공수요확대를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 및 개선추진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자가 직접 가공하는 경우 인증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가공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유기농산물로 한정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인증의 종류를 무농약과 저농약도 가공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보완 개선

나. 비능률, 비효율적 업무 관리방법 개선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처리요령을 개선
 - 생산과정조사주기를 월1회에서 분기1회로 개선
 - 단체 인증시 개별농가심사에서 모집단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개선
 - 단체 인증신청시 개별농가단위 심사를 일정비율의 표본농가단위 심사로 개선

- 인증부담비용 경감 등 고객 지향적 업무추진
 - 지적도, 토지대장(원본)등 제출서류를 G4C로 대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토양검사주기를 매년검사에서 3~4년에 1회 실시하도록 개선
 - 토양·용수·잔류농약검사를 타기관 및 타업무 검사 성적을 활용토록 개선

다. 소비자만족을 위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관리강화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위한 방안 마련
 - 유통상의 문제 및 품질 이상품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리콜제 도입
 - 소비자단체와 연대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단계의 주기적인 합동점검제도 도입

- 친환경농산물 재배이력표시제도 도입
-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포상금제도의 도입

- 민간전문인증기관과 역할분담 실시추진
 -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신뢰 할 수 있는 대학 등 위주의 시·도별 3개 이상 육성
 - 지역 및 권역별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담당제 추진

- 민간전문인증기관 인증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인증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해외 생산지 및 국내 유통과정조사 관리 강화

- 민간전문인증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대책마련 추진
 -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인 생산 및 시판품 조사 등 정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인증기관별 인증농산물에 대한 홍보 전시회 개최 등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적극 홍보

5. 친환경인증업무의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

- 기본방향 : 현행 농산물인증제도를 Codex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재정비

- 민간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사업 시스템으로 전환 및 활성화 추진
 - 미국, EU등 외국의 인증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

- 친환경인증농산물관리는 Codex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관리
 - 친환경인증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농산물만 관리

- 친환경농산물중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을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통합관리 유도
- 각종인증업무(친환경,GAP등)를 민간인증으로 이관하고 우리원은 지도관리 감독 및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정부(농관원) 인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이양 추진
-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6. 증장기 계획 이후의 변화된 모습

- ◇ 2010년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10%의 수준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중 무농약, 저농약의 하위수준에서 유기, 전환기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인 구조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 인증업무의 이원화 체계정착(농관원은 인증기관지정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업무)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안전성, 품질이 생명인 친환경농산물을 신뢰상품(Credence goods)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기축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추진현황

- 전국 31개 유기축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여건 조사
 - 유기축산 여건이 우수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축산 인증을 추진토록 유도
 - 인증농가 : 7개소(산란계4, 육계2, 돼지고기1)
- 국내 유기축산모델 설정을 위해 농협 안성목장에서 5개 축종(한우, 젓소, 돼지, 육계, 산란계)에 대해 농림부 시범사업 추진 중

나. 문제점

-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생산기반 부족
 - 사료생산기반 부족으로 일반사료 조차도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수입유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순환적 유기농법에 기초한 유기축산 육성이 지난

- 유기축산으로 전환에 있어 초기 손실발생의 우려로 인해 축산농가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함
 - 축사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어 하는 생산비 증가
 -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제한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실 우려
 - 기존의 배합사료의 영양 및 성장을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육질 저하 등 생산성 저하 우려
 - 사료포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제초제 및 살충제 미 살포시 생산량이 50% 수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축산업 발전의 한계성 내재
 - 전체 축산물의 1%를 유기축산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기준으로 15만톤의 사료가 공급되어야 하나, 현 여건에서는 공급 가능량이 6만톤 수준이며 약 0.4% 수준의 유기축산물밖에 생산하지 못할 전망이다
 - 향후 국내에서 유기사료(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기농 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유기사료원료의 수급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유기축산물 생산이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다. 국외 현황

< 영국 >

- 영국의 유기농지 현황

구 분	영구초지	가변초지	곡 물	채 소	기 타	계
면 적 (천 h a)	482	67	35	12	33	629
비 율 (%)	76.6	10.6	5.6	1.9	5.2	100.0

- 전체 유기농지 중 3/4이 영구목초지이고 가변초지(사료포)도 10%를 차지함에 따라 농장 내에서 순환적인 유기축산 시행이 가능
- 농가당 평균 41ha중 약 35ha는 사료생산을 위한 면적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6ha는 곡물 및 채소류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한 농장 내에서 축산과 경종이 유기적인 순환농업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호 주 >

- 유기농지는 전체 농지의 1.7%인 790만ha로 이중 초지로 이용되는 면적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75%(593만ha)이며, 주요 생산품목은 쇠고기임
- 생산량 : 육용우 16천톤, 생유 24천톤, 계란 251톤, 돼지 112톤
- ※ 가축 사육두수당 유기농지는 200ha 이상으로 완전방목이 가능
- 수출량 : 쇠고기 240톤, 생유·계란·벌꿀 180톤

2. 유기축산 증장기 발전계획

〈증장기 발전방향〉

- ◇ 친환경축산물 생산물량 확대 계획
 - 전체 축산물 생산량 중 '13년까지 10%로 확대
 - 유기 및 전환유기축산물 2%, 무항생제 축산물 8%
-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 친환경농업육성법 인증기준 제도보완
 - 유기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기배합사료 유통활성화 추진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 ◇ 유기축산물의 안정적 정착유도
 -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와 연계한 순환적 농법에 의한 유기축산
 - 유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가.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 유기축산 인증여건 우수농가의 적극적 발굴 및 인증추진

-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축산농가 교육사업(한우, 양돈, 조사료 등) 추진시 친환경축산 교육을 병행 실시
- 금년 상반기 조사한 31개 유기축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출장소 및 민간전문인증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 유기축산물 및 전환기 유기축산물 생산량을 '10년까지 1%대를 확대하고 '13년까지는 2%까지 발전

- 무항생제 축산물 개념을 도입하여 양돈과 육계를 중심으로 '10년 전체 축산물생산량의 2%, '13년 8%대로 생산량 확대

구 분	2005	2008	2010	2013	비 고
인 증 물 량	-	17	86	430	'02년 축산물전체 생산량 4,297천톤 기준
전 체 비 율	-	0.4%		10%	

- 생산성, 상품화 단위, 출하처, 사료가격 대비 제품가격, 소비자 선호도 등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산물 단계별로 발전시킴

구 분	한우고기	돼지고기	우 유	산 란 계	육 계
인 증 단 계	유 기	무항생제	전 환 기	유 기	무항생제
생 산 형 태	농가·단지	단지·계열화	농가·유업계	농가	단지·계열화

- 산란계 : 농가에서 직접 개별 포장하여 소비처에 직접출하가 가능하고 소비단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농가단위에서 유기축산물로 육성
- 양돈·육계 : 별도의 도축·가공 과정이 필요하고 대량 소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축산단지 및 계열화사업장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추진
- 낙농 : 농가에서 자체가공이 가능한 농가 및 농가와 계약생산을 하는 유업계를 대상으로 유기 및 전환기 유기축산 실시
- 한우 : 브랜드업체, 생산자단체, 백화점 및 대형음식점 납품농장을 대상으로 고품질·

고가의 제품으로 특성화

- 기존 계열화업체 및 사료업체의 유기축산물 생산참여 유도
 - 현재 유기축산물 생산을 계획 중인 CJ, 대상농장, 남양유업 등과 같은 가족계열화업체 및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의 일정부분을 친환경축산물로 전환케 하여 친환경축산물의 대중화 유도

나. 친환경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 친환경축산물 범위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
 - 친환경축산물 범위를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에 무항생제축산물을 포함하고 무항생제인증기준을 별도 제정
 - 친환경축산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유기사료의 급여문제를 해결
 - 유기사료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혼입과 관련한 인증기준 보완
 - 사료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유사규정(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준용하여 GMO함량이 3%이하인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혼입은 인정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기축산 모델설정
 - 유기사료 생산 및 확보방안 등 관련 규정을 개정, 국내 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모델을 설정하여 우수 축산농가에 보급 추진
 - 유기사료의 생산 및 관련 기준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보완
- 국내 유기배합사료 생산 활성화 대책 추진
 - 현재 유기배합사료 생산을 위해 4개 사료업체가 등록을 추진·준비

업체명	농협안성목장	여주자영농고	이레식품	CJ사료	합계
일생산량(MT)	18	30	50	30	128
년생산량(MT)	8,100	13,500	22,500	13,500	57,600

※ 년 생산량은 일산×300일×150%(가동율)

- 유기사료 활성화를 위한 유기배합사료 제조업체 지정 및 유통관리 강화

- 유기적으로 재배된 곡물류나 유기배합사료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유기축산으로 전환 지난
 - 유기축산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축산농가가 쉽게 유기사료를 구매토록하여 농가가 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을 용이토록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사료 생산 및 가축 급여기준에 적합한 유기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체를 “유기배합사료제조업체”로 지정하고 동 사료에 대해서는 「유기사료」로 표시하여 시판방안 검토
 - 원료의 유기농산물 인증여부, 원료보관 및 생산라인 구분 등 확인

다. 유기축산물의 안정적 정착유도

-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 유도 및 순환적 유기농법에 기초한 유기축산 유도를 위해 유기농산물부산물과 유기축산농가의 연계공급방안 강구
 - 국내여건에서 안정적인 유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연계하여 유기농산물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지역단위 유기농업 Network를 구축
 - 순환적 유기농업의 개념을 충실하기 위해 사료중 조사료의 급여비중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료작물 재배확대 권장
 - 총채보리사료와 같이 휴경지 및 논농업업직불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과 연계
- 유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유기사료 개발 확대
 - 유기배합사료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중국에 의존한 수입선을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
 - 인도네시아 등 생산여건이 우수하고 생산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CJ, 카길 등 국내 사료업계에서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

3. 중장기 계획 이후의 변화된 모습

◇ 유기·무항생제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

-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의 축산물 생산
 - 국내 축산물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품질인증 축산물, 일반 축산물로 다양화하여 소비자 선택욕구 충족

- 유기농업과의 순환적인 친환경축산 발전
 - 유기농업 부산물(벼짚, 미강, 유기채소·과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여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의 연계 강화

- 외국의 유기축산물 수출요구에 대비한 국제기준으로 유기축산기반 마련
 - Codex 규범 등 선진국 수준의 유기축산을 확보하여 외국 유기축산물과의 경쟁력 확보